

의안번호	제116호
의결연월일	2019. 9. 19.

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9월 11일 논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19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관계법령 개정(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 보상 관련 조항 신설)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 규정 표준화(안 제8조 제10항)
-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신설(안 제15조 제2항 별표)
- 요양, 장해, 장제, 유족 보상 신설(안 제15조~제17조 별지제7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